

의안번호	2215918
의 퇴 인	황정아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3.
추계번호	26F009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
-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(SMR) 추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의 공제율을 현행 대비 5%p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8년 1,592억원, 2032년 912억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6,821억원(연평균 1,36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현행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외 분야의 R&D 세액공제는 2029년말까지 적용됨에 따라, 2031년(징수기준) 이후 세수효과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발생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8~2032년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율 인상 (안 제10조제1항)	-1,592	-1,680	-1,771	-866	-912	-6,821	-1,36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R&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5%p 인상 - 공제율(%): (현행) 대 30, 중견 30, 중소 40 → (개정안) 대 35, 중견 35, 중소 45 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(SMR) 추가 - (현행) 8개 분야 → (개정안) 9개 분야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○ 단,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(SMR)를 추가하는 내용은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징수기준 2028년부터 세수효과 발생

- 개정안의 2026년 중 통과, 2027년 귀속분 적용을 가정하면,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
 - 현행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외 분야의 R&D 세액공제는 2029년말까지, 반도체 분야의 R&D 세액공제는 2031년말까지 적용되므로, 2031년부터의 세수효과는 반도체 분야에 국한됨

□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~2024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5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단, 2025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므로 기술별·기업규모별 비중은 2023~2024년 합산실적의 비중과 같다고 가정
-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액 비중은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심의금액 비중과 같다고 가정
 -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적용기한이 다르게 적용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22~2024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로 심의를 통과한 R&D 금액의 비중이 R&D 세액공제에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가정
 - ※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 우대공제가 시행
- 향후 R&D 세액공제 증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□ 향후 기업에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
□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 행태의 내생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
-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에 따라 R&D 지출 규모를 비롯한 기업 의사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: 2025~2029」, 2025.10월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 개요) R&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, 기술별·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

○ 현행 기업이 2029년말(반도체 분야는 2031년말)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지출한 R&D 비용에 대하여 일반 또는 신성장·원천기술의 R&D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－ (공제율)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당기분 기준 중소기업 40%,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%

－ (적용기한)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2031.12.31.

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 및 신성장·원천기술 2029.12.31.

○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R&D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율을 5%p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[표 2]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: 현행 및 개정안

(단위: %)

	공제율(현행)			공제율(개정안)	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기술	최대 2	8	25	최대 2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20	20	30	20	20	30
국가전략기술	30	30	40	35	35	45

주: 1. 음영은 현행 및 개정안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

2.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받는 우대공제율은 제외한 수치임

□ (공제실적) 2023년 및 2024년 R&D 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각각 4조 5,221억원, 2조 8,560억원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음

○ 한편, R&D 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2023년 4조 6,302억원, 2024년 2조 9,575억원 수준

○ 2025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4조 1,473억원으로 2024년 대비 40.2% 증가

[표 3] 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및 2024년 신고 기준
(단위: 억원)

	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2023 신고	일반	14,852	2,886	6,023	23,760
	신성장·원천기술	266	255	8,971	9,492
	국가전략기술	32	9	11,927	11,968
	계	15,150	3,150	26,920	45,221
2024 신고	일반	13,150	950	5,614	19,714
	신성장·원천기술	195	562	5,407	6,164
	국가전략기술	54	99	2,529	2,682
	계	13,398	1,611	13,550	28,560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공제액 전망치) 2025년 잠정실적을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구분한 후,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(2025.10월)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-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의 분야별 비중은 2022~2024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R&D 비용의 분야별 비중과 같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는 기업의 개별 R&D 지출 및 시설투자가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며, 2022년 7월 기준 신성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심의까지 담당하도록 확장 개편
 - 연간 4회 개최
 -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심의는 제4차(2022년 12월) 심의회부터 시작됨
- 2022~2024년간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R&D 비용은 총 6,799억원으로, 이 중 반도체 분야의 비중은 46.4% 수준
 - 기간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인정받은 R&D 비용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반도체	이차전지	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	수소	디스플레이	전체
R&D 금액	3,155	2,875	704	43	22	6,799
(분야별 비중)	(46.4)	(42.3)	(10.4)	(0.6)	(0.3)	(100.0)

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~2024년간 기술별 합산 공제실적의 비중을 2025년 잠정실적에 적용하면 국가전략기술의 공제규모는 8,046억원 수준이며, 여기에 다시 동기간 기업규모별 공제실적의 비중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공제액이 대기업에서 발생
 - 기술별 비중(%): 일반 58.9, 신성장·원천기술 21.2, 국가전략기술 19.9
 - 기업규모별 비중(%): (국가전략기술) 중소기업 0.6, 중견기업 0.7, 대기업 98.7

[표 5] 기술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, %)

		2023년	2024년	합산(비중)	2025 (합산비중×41,473억원)
기술별	일반	23,760	19,714	43,474 (58.9)	23,877
	신성장원천기술	9,492	6,164	15,656 (21.2)	8,599
	국가전략기술	11,968	2,682	14,650 (19.9)	8,046
		2023년	2024년	합산(비중)	2025 (합산비중×8,046억원)
국가전략 기술 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32	54	86 (0.6)	47
	중견기업	9	99	109 (0.7)	60
	대기업	11,927	2,529	14,456 (98.7)	7,939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2~2024년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심의현황을 반영하여, 반도체와 반도체 외 분야를 구분하면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
 - 기술분야별 비중(%): 반도체: 46.4, 반도체 외 53.6

[표 6] 기술분야별 R&D 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	2025년 추정치	기술분야별 비중	
			반도체(46.4%)	반도체 외(53.6%)
국가전략 기술 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47	22	25
	중견기업	60	28	32
	대기업	7,939	3,684	4,255
	계	8,046	3,734	4,312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 - 단, 2030년 이후 투자증감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(5.4%)으로 증가한다고 가정

[표 7]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분야별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국가전략기술>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반도체	4,196	4,438	4,685	4,937	5,202	5,481
- 중소기업	25	26	28	29	31	32
- 중견기업	31	33	35	37	39	41
- 대기업	4,140	4,379	4,623	4,871	5,133	5,409
반도체 외	4,846	5,126	5,412	5,702	-	-
- 중소기업	28	30	32	33	-	-
- 중견기업	36	38	40	42	-	-
- 대기업	4,781	5,058	5,340	5,626	-	-
명목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증감률 전망(t-1)	6.3	5.8	5.6	5.4	5.4	5.4

주: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증감률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□ (세수효과)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 전망치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국가전략기술 R&D 지출에 대한 현행 및 개정안의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음
 - 공제율(%): (현행) 대기업 30, 중견기업 30, 중소기업 40 →
(개정안) 대기업 35, 중견기업 35, 중소기업 45
 - 단,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와 반도체 외 분야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다를 경우를 감안하여, 분야를 구분하여 세수효과 추계

[표 8]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

(단위: 억원)

		2028	2029	2030	2031	2032
반도체	현행(A)	4,438	4,685	4,937	5,202	5,481
	개정안(B)	5,177	5,465	5,759	6,068	6,394
	차이(C=B-A)	-739	-780	-822	-866	-912
반도체 외	현행(D)	5,126	5,412	5,702	-	-
	개정안(E)	5,979	6,312	6,651	-	-
	차이(F=E-D)	-853	-901	-949	-	-
세수효과 계(C+F)		-1,592	-1,680	-1,771	-866	-912

주: 1.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8년도 귀속분부터 발생

2.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31년말까지이므로 세수효과는 2032년까지 발생하는 반면, 반도체 외 분야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9년말까지이므로 세수효과는 2030년까지 발생

(3) 추계결과

□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‘R&D 세액공제’)의 공제율을 현행 대비 5%p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8년 1,592억원, 2032년 912억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6,821억원(연평균 1,36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현행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외 분야의 R&D 세액공제는 2029년말까지 적용됨에 따라, 2031년(징수기준) 이후 세수효과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발생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8~2032년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율 인상(안 제10조제1항)	-1,592	-1,680	-1,771	-866	-912	-6,821	-1,364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